

- 시사점:
  - 대만 특수영양식품의 정의 및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 식품 수입 시 특수 영양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인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함

##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□ 「네델란드 소고기 및 그 제품의 수입규정」 「스웨덴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 규정」 「일본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」 초안 제정  
 「荷蘭牛肉及其產品之進口規定」, 「瑞典牛肉及其產品之進口規定」, 「日本牛肉及其產品之進口規定」

- 문서발송일자 : 2017년 7월 17일,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 
 (문서번호 : 部授食字第1061301743號 公告 )
- 문서공고사항(제정 중점사항)
  1. 제정기관 : 위생복지부
  2. 관련 규정 : 「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역방법」
  3. 「네델란드 소고기 및 그 제품의 수입규정」 「스웨덴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 규정」 「일본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」 초안
  4. 광우병 병력 및 동세대의 소 및 그 소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한다
  5. 머리뼈, 머리, 눈, 척추, 다진 소고기, 내장 등과 전술한 항목 및 (붙임 2)의 36개 세척번호에 해당하는 것도 수입 불가 항목으로 포함한다.
  6. 수입소고기는 「수입 소고기 검사 및 검역 작업순서」에 의거 원산지, 통관검역 및 시장유통 모두 검사의 대상이 된다.
  7. 수입 소고기 및 그 제품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.